

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

1. 관련근거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, 제9조

2. 추천 의뢰 기관 : 일자리지원과-4611(2021.3.9.)

3. 추천 인원 : 2명

마포구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 구성(안)

○ 구성인원 : 10명 이내로 구성 (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 포함)

-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
-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
- 관계 공무원(단, 전체 의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)
-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

○ 위원장 : 관광일자리국장

○ 임 기 : 2년(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)

○ 기 능 : 다음 사항을 심의

-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 사항
-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 사항
-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

4. 추천자(안)1)

① 서종수 의원

② 신종갑 의원

1)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7조에 따라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추천